

《東아시아古代學》 審査規定

제1조(심사대상)

- 1)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2) 편집위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할 때는 한 호에 편집위원 게재 논문이 2편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조(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절차)

- 1)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, 투고된 논문과 관련 있는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위촉하고,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, 집행한다.
- 2) 논문심사위원의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정한 심사와 심사에 대한 비밀을 서약한다.
 - ② 심사위원은 평가 항목과 심사대상 논문의 질적 수준(상, 중, 하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'게재여부'를 결정하도록 한다. [게재 / 수정후게재 / 수정후재심 / 반려]
 - ③ 심사위원은 총평과 수정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,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.
 - ④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와 심사결과를 온라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. (부득이한 경우 서명·날인한 후 우편으로 발송한다.)
- 3)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아래 대외비로 한다.

제3조(결과판정)

- 1) 심사결과 <게재>로 판정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.
- 2) 심사결과 <수정 후 게재>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,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,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.
- 3) 심사결과 <수정 후 재심사>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당호 게재나 차호 재투고 여부를 결정한다. 차호 재투고로 결정된 논문이 재투고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하며, 이때 심사결과는 게재/게재불가로만 한다.
- 4) 심사결과 <게재불가>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,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<게재불가> 판정사유를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,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- 5)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<게재>와 <수정 후 게재>로 나뉠 경우, 편집위원회는 <수정 후 게재> 의견을 따른다.
- 6)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<게재>, <수정 후 게재>, <수정 후 재심사>로 나뉠 경우, 편집위원회는 <수정 후 게재> 의견을 따른다.
- 7)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<게재>, <수정 후 게재>, <게재불가>로 나뉠 경우, 편집위원회는 <수정 후 재심사> 의견을 따른다.
- 8)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<게재>, <수정 후 재심사>, <게재불가>로 나뉠 경우, 편집위원회는 <게재불가> 의견을 따른다.
- 9)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<수정 후 게재>와 <수정 후 재심사>으로 나뉠 경우, 편집위원회는 <수정 후 재심사> 의견을 따르고, <수정 후 게재>와 <게재불가> 혹은 <수정 후 재심사>와 <게재불가>로 나뉠 경우

편집위원회는 <게재불가> 의견을 따른다.

- 10)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<게재> 2와, <수정 후 재심사> 1로 나뉠 경우, 편집위원회는 <수정 후 게재> 의견을 따르고, <게재> 2와 <게재불가> 1로 나뉠 경우 <수정 후 재심사> 의견을 따른다.
- 11) 심사위원의 판정소견이 <게재> 1과 <수정 후 재심사> 2로 나뉠 경우, 편집위원회는 <수정 후 재심사> 의견을 따르고, <게재> 1과 <게재불가> 2로 나뉠 경우 <게재불가> 의견을 따른다.
- 12) 동아시아고대학회에서 자유주제나 기획주제로 발표한 논문이 <수정 후 재심사>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당호 게재를 원칙으로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친다.

제4조(부칙)

- 1) 본 심사규정은 2008년 8월 27일부로 개정 발효한다.
- 2) 본 심사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- 3) 본 심사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- 4) 본 심사규정은 2014년 5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- 5) 본 심사규정은 2018년 4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